학과평가 규정

제정: 2015. 02. 06. 개정: 2022. 08. 05.

담당: 평가감사실(02-950-5561)

목 차			
제1조(목적)	제2조(평가방향)	제3조(평가대상)	제4조(평가주관부서)
제5조(구성)	제6조(기능)	제7조(평가주기)	제8조(평가분야)
제9조(평가계획 수립)	제10조(평가방법)	제11조(평가결과 활용	제12조(기타사항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학과평가(이하 "평가"라고 한다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방향) ① 학과 간 경쟁력을 분석하여 연구 및 교육의 질적 향상과 외부기관에 의한 대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.

② 평가 결과를 학과 발전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.

제3조(평가대상) 학칙상의 학과를 평가대상으로 하며, 학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.

제4조(평가주관부서) ① 평가는 평가감사실에서 주관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학과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학과평가 자료 취합 및 정리에 관한 사항
- 3. 학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과평가 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제2장 학과평가위원회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평가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
- 2.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
- 3. 평가 결과 및 활용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학과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

제3장 평가체계 및 절차

제7조(평가주기) 평가주기는 매 학년도(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)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실시한다.

제8조(평가분야)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정의된 대내경쟁력과 대외경쟁력 항목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한다.

- 1. 대내경쟁력은 교내 학과 간 경쟁력 평가
- 2. 대외경쟁력은 교내 학과와 유사한 타 대학의 학과 간 경쟁력 평가

제9조(평가계획 수립) 평가감사실장은 매년 평가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각 학과에 통보한다.(개정 2022.08.05)

제10조(평가방법) ① 평가는 기존 통계자료와 대학정보공시자료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실시한다.

- ② 대외경쟁력 평가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알리미에서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유사학과 전체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평가를 위한 항목, 지표, 배점(가중치) 등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

제11조(평가결과활용) 학과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정에 의하여 학과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의 활용은 주야간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정원조정에 의한 편제정원이 완성되는 2018년도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교내 각종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